

의안번호 제97호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출 자	서 원 의원 외 3명
제출연월일	2020. 8. 25.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 제97호

발의연월일 : 2020. 8. 25.

대표발의자 : 서 원

공동발의자 : 조배식, 최정숙,

김만중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삭제 및 수정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고 투표용지 기재방법 추가(안 제8조)
- 나.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의안의 제출·발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(안 제9조, 제19조)
- 다.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범위를 규정(안 제9조의2)
- 라. 5분 자유발언 보고기한 명시(안제37조의2)
- 마. 시정질문과 긴급현안 질문관련 사항을 적시함.(안 제73조의2 ~ 제73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43조, 제48조, 제54조, 제6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 : 조례안 붙임

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0. 8. 25. ~ 8. 29.(5일간)

□ 개정규칙안 논산시 규칙 제 호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 한다. 그러나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.
- ③ 의장,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.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, 불신임,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, 휴가,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"를 "다만,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,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"로 한다.

제3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2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 "시정질문" 이라 한다)을 할수 있다.
-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・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할 수 있다.
-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. 이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 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일을 제 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(토요일·공

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

-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(토요일·공휴일을 제외한다)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-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 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
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"긴급현안질문"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 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.
-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,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. 이 경우 "질문"은 "긴급현안질문"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논산시의회 의원 자	서 원 의원 외 3명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 까지 실시한다. 그러나, 그날이 공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 한다.
③ 의장,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. ④~ ⑦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
<u>와 같음)</u> 제9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
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, 총선거 후 처음 서추되 이자과 부이자이 이기는
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 <u>신 설></u>	개 정 안 제9조의2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. 이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, 불신임,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, 휴가,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
	 □ 의정을 내다하는 무의정의 적 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 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.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 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
	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.
제19조(의안의 제출 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전자화일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<u>다</u>	제19조(의안의 제출 발의)
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,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 ②~③ <생략>	

현 행	개 정 안
전 항 제37조의2(5분 자유발언)①~④<생략> <신 설>	제37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~④ <현행과 같음>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<생 락>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드다되도로 소부하여야 하다	제72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~③ <현 행과 같음> <삭 제>
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	제73조의2(시정질문)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(이하"시정질문"이라한다)을 할 수 있다.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, 본질문은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

현 행	개 정 안
	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
	식으로 하여야 하며, 보충질문은
	본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
	하여야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에
	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. 다
	만,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
	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
	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
	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
	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, 보충질문
	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
	다.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
	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	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
	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	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
	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
	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
	시정질문 첫날 5일전(토요일·공휴
	일을 제외한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
	해야 하며, 의장은 질문일 4일 전
	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
	<u>야 한다.</u>
	⑤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까
	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
	록 송부하여야 한다

현 행	개 정 안
	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
	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
	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
	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
	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
	<u>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제73조의3(긴급현안질문) ① 의원
	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
	으로 제73조의2 질문에서 제기되
	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
	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
	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(이하 "긴급
	현안질문"이라 한다)을 의장에게
	<u>요구할 수 있다.</u>
	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
	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
	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
	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	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 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
	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
	다. 다만,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
	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
	할 수 있다.
	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
	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
	야 한다.
	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
	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

현 행	개 정 안
	하여 60분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
	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
	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
	<u>있다.</u>
	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
	질문시간은 10분을, 보충질문은 5
	분을 초과할 수 없다.
	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
	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
	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. 이 경
	우 "질문"은 "긴급현안질문"으로
	<u>본다.</u>

관계 법 령

1.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 -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.
- 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 -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

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 기할 수 있다